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01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이광희 · 이수진 · 김문수
박지원 · 임미애 · 김 윤
박성준 · 이주희 · 김승원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면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학대행위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재학대의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반환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대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반환 이후 사육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 단계에서 재학대 우려를 고려하여 반환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규정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43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43조제4호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